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  
(김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49
----------	------

발의년월일 : 2017. 10. 26.  
 발 의 자 : 김 혜 정 의원  
 김 의 식 의원  
 조 성 제 의원  
 임 인 환 의원  
 이 경 애 의원  
 이 재 화 의원

1. 제정이유

-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도박·음란·폭력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안 제9조)
- 다. 보호조치 및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 안 제13조)

3. 조 례 안 : 붙임

4. 예산조치 : 필요함

5. 관계법령 :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도박·음란·폭력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 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대구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가 운영하는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란 청소년이용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생, 방문자 등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인터넷 게임중독"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5. "인터넷중독"이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6.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7.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되는 인터넷게임·인터넷중독, 청소년유해매체물과 폭력정보 노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말한다.
8. "정보통신망"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9. "기술적 보호조치"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인터넷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도박·음란·폭력정보 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10. "종합적 보호조치"란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기능)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 방안
3.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기술적 보호조치 기능 검토 및 개선 방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통신보안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③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사항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종합적 보호조치) 시장은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 강사 파견·교육 실시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3. 그 밖에 기술적 보호조치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기술적 보호조치) ① 인터넷게임·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스마트폰
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권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보급

제12조(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2.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
- ② 시장은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기능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구·군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계별 확대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호의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의 기술적 안전조치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급을 시작하며, 해마다 보급률이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삭제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1.19.>

④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5.22.>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⑧ 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13.5.22., 2016.5.29.>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과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